

대통령령 제 호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5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서민금융진흥원장(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5(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)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“시·도지 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의5(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서민금융진흥원장(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원 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